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94호
2. 발 의 자 : 최재란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4.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중인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간식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공립 특수학교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 나.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및 위생·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Ⅳ.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입법예고 : 2025. 10. 28. ~ 11. 1.(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94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립초등학교 외 공·사립 특수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시간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늘봄학교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늘봄학교¹⁾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장·운영하는 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현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²⁾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³⁾해왔습니다.

1) 늘봄학교 기본 추진체계, 「2025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기본 계획(안)」, (2025.1)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 (공급자 중심)		➔	늘봄학교 (수요자 중심)			
오후1시			오전	오후1시	3시	8시
정규 수업	방과후학교 또는 돌봄교실 중 선택		정규 수업	초1~2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돌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초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포함)		

2) 초등 돌봄에 참여하는 일반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모두 포함

3) 초등 돌봄 참여 학생에게 일 최대 2회(오후, 저녁) 제공하며, 지원 단가는 1인당 2,500원

○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매년 5만 명 정도의 학생이 간식을 일 최대 2회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2025년을 기준으로 참여 학생의 간식 지원을 위해 253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⁴⁾ 되었습니다.

[표-1] 2023~2025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⁵⁾

연도	사업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3	돌봄교실간식비	24,025,000	20,577,610	3,447,390
	저녁돌봄운영비(특별교부금)*	1,856,400	1,856,375	25
	소계	25,881,400	22,433,985	3,447,415
2024	저소득층지원	875,000	873,529	1,471
	돌봄교실운영비	18,582,130	18,581,824	306
	돌봄교실간식비	19,200,000	19,198,378	1,622
	돌봄운영다양화지원(특별교부금)*	3,643,000	3,552,542	90,458
	소계	42,300,130	42,206,273	93,857
2025 (11. 5. 기준)	돌봄교실간식비	25,398,000	17,747,859	7,650,141
	소계	25,398,000	17,747,859	7,650,141

* 저녁돌봄운영비에 저녁간식비 포함하여 지원

[표-2] 2023~2025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 학생수(중구형 위탁교 제외)⁶⁾

(단위 : 개교, 명, 연도별 4.30. 기준)

연도	학교 수	참여학생 수			
		17시까지			17시 이후
		오후돌봄	연계형돌봄	합계	저녁돌봄
2023 (4. 30. 기준)	555	39,292	6,586	45,878	1,589
2024 (4. 30. 기준)	556	40,069	8,238	48,307	1,832
2025 (4. 2. 기준)	557	39,357	8,427	47,784	2,776

4)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2761번(2025.11.07., 초등교육과 제출)

5)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2761번(2025.11.07., 초등교육과 제출)- 최근 3년간 간식비 현황

6)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2761번(2025.11.07., 초등교육과 제출)- 간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

- 이는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근거 없는 늘봄학교 간식비 재정지원은 지양해야 한다”⁷⁾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의 발의 당시 “특수학교 초등과정 대상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의 지적⁸⁾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 또한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 관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공사립 특수학교 25개교 중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의 맞춤형 프로그램⁹⁾ 대상자는 417명이고, 이중 선택형 돌봄프로그램¹⁰⁾ 참여자(348명¹¹⁾)에게는 특수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비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초등 늘봄학교 간식비 기준’¹²⁾에 따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초등과정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1인당 1,500원,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1인당 2,500원을 기준액으로 책정하여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7)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중 최민규 위원장의 발언 발췌

8)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2025.4.29.)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중 최재란 의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동 조례 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9) 교육부(2025.01)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초등학교편」 4p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 등을 매일 2시간(차시)이 상으로 편성·운영하는 무상 늘봄 프로그램”

10) 교육부(2025.01)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초등학교편」 4p
“늘봄교실 등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늘봄전담사) 등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

11)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978번(2025.5.9., 특수교육과 자료 제공) - 서울 관내 공사립 특수학교 늘봄학교(맞춤형, 돌봄) 운영 현황(2025.4 기준)

12)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978번(2025.5.9., 특수교육과 자료 제공)/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급·간식 관리

[표-3] 2025년도 초등과정 운영 공·사립 특수학교 예산 소요액¹³⁾

대상: 25교(초등과정 운영 공·사립 특수학교)

▶ 소요예산: 금358,920,000원

- 산출식: 150,120,000원(1,500원×240일×417명) ※ 초등과정 늘봄(맞춤형) 참여 학생 지원

- 산출식: 208,800,000원(2,500원×240일×348명) ※ 초등과정 돌봄교실 참여 학생 지원

-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 자체 운영비를 활용한 지원 방식은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교부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별 재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학교 역시 학교의 형편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간식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근거 마련과 함께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특수학교 학생에게도 일반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안정적인 간식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입법적 공백인바,

특수학교 학생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며,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늘봄학교 간식 지원을 위해 안 제4조는 기존 공립 초등학교에 한정되었던 적용 범위를 특수학교 중 초등학교에

13)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978번(2025.5.9., 특수교육과 자료 제공) - 예산 소요액

준하는 교육을 하는 공·사립학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 및 제4조(차별의 금지)¹⁴⁾의 규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에서 별도의 예외 사유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입법 취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법 제6조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등을 위탁할 경우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과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동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바, 일반 공립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 모두에 간식비를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안 개정 취지와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8조는 교육감에게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위생·안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간식 제공이라는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섭식 기능이나 알레르기 등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호 생략

더욱이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안 제8조는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합리적 배려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서울형 특수학교 늘봄추진단 TF 연구보고서¹⁵⁾에 따르면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섭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석식 준비 및 제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간식 제공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계획을 규칙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 10. 3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진석(2180-8266)
----------	----------------	-------	----------------

15)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팀), 「2024 서울형 특수학교 늘봄추진단(TF), 늘봄학교 모델링 연구보고서」 133p 참조